

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6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11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체육인의 인권 보호 시책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(법률 제17580호, 2020. 12. 8, 일부개정, 2021. 6. 9 시행) 개정되고, 대한체육회에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규정 및 평가기준안 통보(2022.1.5.)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입단계약의 체결 관련 조항 구체화 (안 제4조)
 - 근로계약시 표준계약서 사용 및 계약기간 명시 등
- 단원의 임무에서 선수의 임무 추가 (안 제6조)
 - 단장의 임무에 선수의 보호 의무 추가
 - 선수의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, 각 직무별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 도모
- 단원의 결격사유 구체적으로 명시 (안 제7조)
 - 문화체육관광부 표준운영안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
- 근무시간 명시 및 휴일 근무시 휴가 보장 (안 제10조)
 - 단원의 훈련시간을 명시하고,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 훈련 및 대회 출전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휴가를 부여
-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관련 조항 신설 (안 제13조)
 -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의 구성 목적, 구성 인원, 주요 협의사항, 개최 횟수 등 명시
- 단원의 인권보호 조치 조항 신설 (안 제14조)
 -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성희롱·성폭력·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의무 명시

- 개정조례안 : 불임1**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2**
- 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3**
 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0조의5
 -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3조의4, 제10조의4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.**
- 예산수반사항 : 불임4**
 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**
 - 입법예고 : 2022. 08. 05. ~ 2022. 08. 24. (20일간)
- 기타 참고사항**
 - 현행조례 : 불임5
 - 방침결정문 : 불임6

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임용)” 을 “(임용 및 입단계약의 체결)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단원은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용한다.
- ④ 단원과의 임용계약은 근로계약으로 하고, 선수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0조의3에 따른 “표준계약서”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은 지도자는 2년 이상, 선수는 1년 이상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창단년도 및 군복무에 해당하는 선수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.
- ⑥ 단원의 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시장은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해고의 예고, 해고사유 등을 기한 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⑦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입단계약 체결 시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단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, 직장운동경기부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관리·감독 및 보호한다.
- ⑤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직장운동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시장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단원의 자격)” 을 “(단원의 결격사유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

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중에 있는 자
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.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9.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
10.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자
11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“학교폭력”을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(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)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, 지속성,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

②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「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

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25조에 따른 직권면직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.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단원의 훈련시간은 제4조제4항에 따른 계약에 따른다. 다만, 단장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, 전지훈련,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 훈련과 대회 출전을 하는 경우, 이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.

제13조를 제15조로 하고,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)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(훈련)환경 개선, 경기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되며,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,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,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협의회는 시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(훈련)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
2.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

3.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

④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,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1년에 1회 이상은 개최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협의회의 설립, 가입 범위,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, 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(인권보호 조치 등) ①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1. 폭력·성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

2.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

3. 휴식시간,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

4. 임신, 출산,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

5.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

②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,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체육진흥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체육진흥과장 김진만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체육진흥팀장 박남규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재학 (행정 2109)

[별지 제1호서식]

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

본인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OO부 단원으로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과 같은 임용 결격사유가 부존재함을 확인합니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중에 있는 자
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.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9.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
10.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자
11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“학교폭력”을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(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)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, 지속성,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

이상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,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임용 결격사유가 있음이 추후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민·형사상 책임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 . . .

서 약 자 :

(서명 또는 날인)

안 산 시 장 귀 하

< 불임 2 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임용) 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.	제4조(임용 및 입단계약의 체결) ① 단원은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용한다.
〈신 설〉	④ 단원과의 임용계약은 근로계약으로 하고, 선수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0조의3에 따른 “표준계약서”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〈신 설〉	⑤ 제4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은 지도자는 2년 이상, 선수는 1년 이상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창단년도 및 군복무에 해당하는 선수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.
〈신 설〉	⑥ 단원의 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시장은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해고의 예고, 해고사유 등을 기한 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② 단원 중 지도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연장할 수 있으며 선수는 해임시까지로 한다.	〈삭 제〉
③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용계약서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	〈삭 제〉

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6조(임무) ① 단장은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하고, 단원을 지휘·감독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<신 설>

제7조(단원의 자격)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.

⑦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입단계약 체결 시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6조(임무) ① 단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, 직장운동경기부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관리·감독 및 보호한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직장운동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시장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.

제7조(단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중에 있는 자

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.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

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7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8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
9.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

10.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자

11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“학교폭력”을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(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)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, 지속성,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

②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

<신 설>

른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「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25조에 따른 직권면직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0조(복무 및 훈련) ① (생 략)

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, 전지훈련,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〈신 설〉

〈신 설〉

제10조(복무 및 훈련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단원의 훈련시간은 제4조제4항에 따른 계약에 따른다. 다만, 단장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, 전지훈련,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 훈련과 대회 출전을 하는 경우, 이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.

제13조(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)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(훈련)환경 개선, 경기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,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,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,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협의회는 시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(훈련)환경

개선에 관한 사항

2.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

3.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

익보호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

④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,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1년에 1회 이상은 개최하여야 한다.

⑤ 안산시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협의회의 설립, 가입 범위,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, 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14조(인권보호 조치 등) ①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1. 폭력·성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
인권보호를 위한 조치

2.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
을 위한 조치

3. 휴식시간,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
조치

4. 임신, 출산,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

한 조치

5.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인정하는 조치 등

②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,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3조 (생 략)

<신 설>

제15조 (현행 제13조와 같음)

[별지 제1호서식]

견적사유 부존재 서약서

본인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00부 단원으로 최종 입증되기 전 다음과 같은 입증결과가 부존재함을 확인합니다.

1. 과정별후련인 또는 과정별후련인
2. 군고 이임회 실무를 선고받고 그 징계이 종료되거나 징계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난지 미비한 치
3. 군고 이임의 징계를 선고 받고 징계유예 기간이 끝난 날짜의 2년이 지난지 미비한 치
4. 군고 이임의 징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중복 있는 치
5. 병역의 원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저작이 침해되었거나 경지진 치
6. 계약단계 계약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법률」 제355조 및 제35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인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징계 확정된 후 2년이 지난지 미비한 치
7. 「직무관련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인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징계 확정된 후 3년이 지난지 미비한 치
8. 이전년도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「이율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율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어 혐의·책임되거나 행 또는 카드강호를 선고받이 그 행 또는 카드강호기 확정된 치(징계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징계유예기간이 경과한 치를 포함한다)
9. 경계로 혐의 또는 책임 체문을 받은 치
10. 경계로 해당 계약단계에서 항구계약을 받은 치
11. 「학교폭력예방 및 학학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「학교폭력」을 행위를 하였거나 기울히였던 치(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)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, 지속성, 고의성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

이상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,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입증결과유가 있음이 추후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민·형사상 책임 등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

서 약 자 :

(서명 또는 날인)

안 산 시 장 귀하

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9-64
--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12월 1일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

수정이유

- 상위법에 맞춰 자구를 일부 수정함.

주요골자

- “제10조의3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”를 “제10조의3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”로 수정(안 제4조)

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4항 중 “제10조의3에 따른 “표준계약서”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”를 “제10조의3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 안	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임용) ①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. <u><신 설></u>	제4조(임용 및 입단계약의 체결) ① 단원은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용한다. ④ 단원과의 임용계약은 근로계약으로 하고, 선수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0조의3에 따른 “표준계약서”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	제4조(임용 및 입단계약의 체결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④ 단원과의 임용계약은 근로계약으로 하고, 선수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0조의3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